

연구 노트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와 관세감축 효과

최 세 균*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arison of agricultural tariff structure by major countries in WTO negotiations and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 by various tariff cut methods. Tariff peak, tariff dispersion and tariff escalation problems are reviewed and evaluated extensively. Prohibitively high rates of tariff remain even in exporting countries. The distribution of the tariff rates is uneven, both among commodities and among countries. Trade distortive tariff escalation is dominant in developed countries. Formula approach gives rise to deeper tariff cut effects and mitigates the problem of tariff peak, tariff dispersion and tariff escalation. In the case of Korea, the tariff reduction rate will be 84.5 percent by the Swiss formula and 79.3 percent by the Canada formula.

- | | |
|-----------------|------------------|
| 1. 머리말 | 3. 관세 감축방식별 감축효과 |
| 2. 관세율 구조의 국제비교 | 4. 맺음말 |

1. 머리말

관세는 수량제한과 함께 수입정책의 기본수단으로 사용되며,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같은 것이다. 관세 부과는 국내가격

을 자유무역의 경우보다 높게 유지시킴으로써 해당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반면 소비를 억제한다. 이러한 역할은 경제활동 참가자 별로 소득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원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세는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재정수입과 국제수지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의 역할은 재정정책적 측면이 점차 감소하고 산업정책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

* 연구위원

는 추세이다. 따라서 관세정책은 재정적 측면보다는 외국의 경쟁 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역자유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 협상이나 지역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관세 협상은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UR 협상 타결 이전까지 농산물 분야는 비관세 장벽에 의한 수입규제와 국내 산업보호가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UR 농산물 협상에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관세양허가 이루어졌으므로 WTO 농산물 협상 가운데 관세협상 분야에서는 관세감축의 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세 분야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감축 폭을 어느 정도로 하는가와 어떠한 방식으로 감축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UR 협상 타결 이후 WTO 농업위원회의 “분석 및 정보 교환” 작업과 제안서 제출 등의 과정을 통해 관세 감축방식과 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관세 감축에 대하여는 수출입국가간 또는 개도국과 선진국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로 다른 감축 폭과 감축 방식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재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체계와 UR 관세 감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다.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많다는 점, 국가간 및 품목간 또는 같은 품목군내에서 관세율의 격차가 크다는 점, 산업보호

효과가 커 무역장벽을 높이는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 문제 등이다.

이 연구는 주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세분야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고율관세, 관세격차, 누진관세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세 감축 방식을 달리할 경우 이러한 관세 구조와 관세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는 국별 관세율표와 FAO, OECD, USDA 등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AMAD’를 이용하였다. 국별로 HS 분류 방식에 의한 품목수가 다르나 농산물로 분류되는 1류부터 24류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품목수는 국별로 700개에서 2,000개가 넘는 경우도 있으며, 증가세를 부과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관세 장벽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

이 연구가 연구 내용의 일부로 다루고 있는 관세감축의 효과에 대하여는 송유철 외(1999)와 임정빈(2000)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다른 감축방식 가운데 스위스 공식과 UR 방식은 중복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캐나다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가 농산물 가운데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계산한데 반해 전체 농산물을 계산하여 그 평균을 이용하였다.

2. 관세율 구조의 국제 비교

2.1. 관세율의 분포 및 고율 관세 현황

관세는 양허관세, 기본관세, 잠정관세, 각

종의 탄력관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실행세율은 관세부과의 우선 순위에 의해 여러 가지 관세율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반면 양허세율은 WTO 양허관세 등 국제적으로 상한 수준의 관세를 약속한 것으로 양허된 관세율 이내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 체계와 관세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관세 장벽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관세의 누진성, 관세 부과 방식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먼저 평균 관세율을 계산하였다. 자료는 앞서 밝힌 바와 같고, 종가세가 부과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행관세의 경우 농산물 수출국이며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태국과 캐나다가 한국이나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 실행관세가 낮은 국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과 일본의 평균 실행세율은 각각 17%와 13%로 높은 수준이다.

양허세율은 실행세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UR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이 관세화되면서 국내외 가격차가 관세로 인정된 품목들이 있어 양허관세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양허세율은 <표 1>에 나타난 주요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다. 한국의 양허관세율이 높은 것은 UR 협상에서 비교적 많은 품목들이 관세화되어 높은 관세로 양허된 농산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높은 양허관세율을 나타내고

표 1 주요 국별 평균 관세율 현황

단위: %

	평균 실행세율	평균 양허세율
한 국	17.10	68.16
미 국	0.06	6.60
일 본	12.95	12.10
EU	-	6.88
호 주	1.17	3.95
캐 나 다	23.76	25.13
뉴질랜드	2.48	7.63
태 국	40.9	36.13

자료: 국별 관세율 자료, OECD, UNCTAD, FAO, ERS 등이 제공하는 'AMAD'.

있는 국가는 태국과 캐나다이다. EU와 미국의 평균 양허세율이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양국이 다 많은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 이외에 다른 형태의 관세 부과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양허관세율이 실행관세율보다 낮은 원인은 많은 품목이 비종가세 형태로 양허된 것과 양허세율은 2000년 기준이며 실행세율은 1998년 기준이라는 점 때문이다. 태국의 경우도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기준연도가 양허세율은 2004년이고 실행세율이 1995년이기 때문이다. 태국은 UR 협상에 의해 관세화에 의한 고율의 관세상당치를 설정한 품목이 많지 않다는 것도 양허관세율을 낮추는 원인이다.

실행세율의 분포를 세율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품목별 분포는 부표 1 참조). 한국의 실행세율은 0~50%까지이나 8%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중심세율을 8%로 정한 1980년대 말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계가 있다. 다음으로 많이 품

목이 분포하는 세율은 9~20%로 전체의 1/4 이상이 여기에 분포한다. 5% 미만의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의 14%이다. 40% 이상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5.8%로 태국이나 일본과 같이 고율 관세 부과 품목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균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40~50%에 이르는 고율 관세는 주로 과실류와 채소류 또는 이들의 조제품에 적용된다.

일본도 한국과 같이 실행세율이 0~50% 범위에 속하나 5% 미만을 적용받는 품목이 한국보다 많아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30%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품목수는 한국과 비슷한 10% 수준이다. 평균 실행 관세율이 한국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5% 이하의 낮은 관세율 적용 품목이 많고 특히 0%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실행세율이 0%인 품목의 비중이 각각 56.1%, 76.2%, 65.5% 등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이 많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5%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5-1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비중이 34.5%로 호주나 미국보다 많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평균 실행세율도 호주의 두 배가 넘는다.

태국의 평균 실행세율은 우리 나라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0.9%로 나타났다. 태국의 실행 관세율은 5% 미만의 저세율 적용이 매우 드문 상황이다(2.8%). 반면 실행세율은 높은 관세로 볼 수 있는 20%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83%이며, 60%의 실행 세율이 적용된 품목이 220개에 달한다. 우리 나라의 중심세율이 8%라면 태국의 중심세율은 60%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태국의 평균 실행세율은 <표 1>에 나타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양허 관세율은 실행세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와 품목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양허관세율은 0%에서 887%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표 2 국별 농산물 실행세율의 분포

국 별	실행세율 분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국	5% 미만: 228품목(13.9%), 5: 55품목(3.3%) 8: 460(28.0%), 9-20: 432 품목(26.3%), 21-30: 315 품목(19.2%), 31-40: 58품목(3.5%), 41-50: 95품목(5.8%)
호 주	0: 535품목(76.2%), 5: 154품목(21.9%), 2-4: 13품목(1.9%)
일 본	5%미만: 643품목(36.0%), 5-15: 467품목(26.1%), 16-29: 488품목(27.3%), 30-51: 190품목(10.6%)
미 국	0%: 928품목(56.1%), 0.1-3.5%: 727품목(43.9%)
뉴질랜드	0%: 671품목(65.5%), 5-9.5%: 354품목(34.5%)
태 국	5%미만: 18품목(2.8%), 5-20: 93품목(14.4%), 21-30: 90품목(13.9%), 31-65: 446품목(68.9%)

자료: 국별 관세율 자료, OECD, UNCTAD, FAO, ERS 등이 제공하는 'AMAD'.

양허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세율로 볼 수 있는 15% 이하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는 전체의 1/4 이상이다. 그러나 70%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12%에 달한다. 특히 750%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28개 품목이 평균 양허관세율을 높이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양허관세율은 최고 114.2%까지 분포한다. 그러나 관세율 15% 이하의 품목이 전체의 70%에 달하여 우리나라의 25%에 비해 훨씬 많다. 비교적 고율 관세로 볼 수 있는 34% 이상의 품목수는 전체의 2.9%이다. 따라서 일본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12.1%로 낮은 편이다. 평균 실행세율보다 낮은 원인은 실행세율이 1998년 기준이라는 점과 실행세율 계산에 들어간 700여 개의 품목이 증가세 이외의 형태로 양허

되어 양허관세율 계산에서는 빠진 것 때문이다.

캐나다와 미국도 실행관세에 비해 양허관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는 150% 이상 314%에 이르는 품목이 낙농품, 육류 조제품, 가공식품을 위주로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수는 전체의 8.7%인 85개 품목이다. 캐나다는 0% 양허관세율을 나타내는 품목수도 472개(전체의 48%)나 되어 평균 양허관세율은 25% 수준이다.

미국은 1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5개 품목에 불과하다. 반면 0% 양허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전체의 35%인 346개 품목으로 캐나다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6.6%로 증가세만을 기준으로 계산하

표 3 국별 농산물 양허세율의 분포

국 별	세율 분포 및 비중
한 국	7% 미만: 105품목(8.9%), 8-15: 130품목(11.1%), 16-27: 428품목(36.5%), 29-45: 222품목(18.9%), 46-68: 139품목(11.8%), 71-630: 122품목(10.4%), 754-888: 28품목(2.8%)
EU	0%: 886품목(47.2%), 1.5-5: 119품목(6.3%), 5.1-10: 289품목(15.4%), 10.1-13: 245품목(13.1%), 13.4-18: 157품목(8.4%), 18.2-28: 150품목(8.0%), 30-74.9: 29품목(1.6%)
호 주	0%: 222품목(28.5%), 1: 232품목(29.7%), 2-5: 114품목(14.6%), 6-10: 143품목(18.3%), 11-17: 56품목(7.2%), 20-29: 13품목(1.7%)
일 본	0%: 300품목(26.3%), 1-4.8: 149품목(13.0%), 5-9.8: 180품목(15.7%), 10-15: 162품목(14.2%), 16-24: 196품목(17.2%), 25-32: 122품목(10.7%), 34-114.2: 33품목(2.9%)
캐 나 다	0%: 472품목(48.3%), 1-7: 212품목(21.7%), 7.4-9.9: 113품목(11.5%), 10-27: 93품목(9.5%), 49-95: 3품목(0.3%), 154-314: 85품목(8.7%)
미 국	0%: 346품목(35.0%), 0.4-4: 155품목(15.7%), 4.2-6: 105품목(10.6%), 6.3-10: 222품목(22.4%), 10.2-30: 156품목(15.8%), 131-164: 5품목(0.5%)
뉴질랜드	0%: 387품목(42.7%), 1-5.3: 49품목(5.4%), 6-11: 137품목(15.1%), 12-15.9: 171품목(18.9%), 16-25: 136품목(15.0%), 25.6-35.2: 26품목(2.9%)
태 국	5%미만: 22품목(3.0%), 9-27: 196품목(26.7%), 30: 278품목(37.9%), 36-94: 223품목(30.5%), 125-226: 14품목(1.9%)

자료: 국별 관세율 자료, OECD, UNCTAD, FAO, ERS 등이 제공하는 'AMAD'.

면 호주 다음으로 낮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양허관세율 6~10% 사이에 222개 품목이 분포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EU의 양허관세율은 75%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세 이외의 형태로 부과되는 관세는 이것보다 높은 것들이 많다. 증가세 형태로 부과되는 양허관세율 가운데 0%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886개 품목으로 전체의 47.2%에 달한다. 반면 30% 이상의 고율 양허관세 적용 품목은 전체의 1.6%이다. EU는 증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의 관세율은 낮은 수준으로 평균 양허관세율은 6.9%이다.

태국과 뉴질랜드 등 케언즈 국가들도 양허관세율은 높게는 200%를 초과하여 실행 관세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태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0~226%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품목이 분포하는 관세율은 30%로 전체의 37.9%가 이 관세율을 적용을 받는다. 1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14 품목으로 전체의 1.9%이다. 뉴질랜드의 양허관세율은 35%가 상한으로 되어 있다. 0%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전체의 42.7%인 387 품목이다. 25%가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26 품목에 불과하다.

2.2. 관세격차 현황

관세격차 문제는 관세 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국가별로 크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동일한 품목군 내에서도 관세율에 차이를 두고 있

는 국가들이 많다. 또한 같은 품목군 내에서도 세번의 분류(또는 품목의 분류)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품목군 내에서의 관세율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 보호적 관세율 체계를 유지할수록, 국별로 수입관리의 필요성이 큰 품목일수록 세번이 세분화되고 품목군 내에서도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쇠고기의 경우를 보면 국가별로 낮게는 0%에서 높게는 7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쇠고기로 분류되는 품목군 내에서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으며, 중국은 최고 70%의 관세가 부과된다. 국별로 품목군 내에서 관세를 차등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은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가 세번별로 차이가 커서 낮은 것은 4%에서 높은 것은 26.4%의 관세가 부과된다. EU, 캐나다, 중국도 미국과 같이 품목군 내에서 세번별로 차등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쇠고기라는 품목군 내에서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이다.

가장 높은 관세 차이를 나타내는 품목군은 곡물류이다. 한국은 곡물류와 전분에 대하여 수백%의 양허관세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호주는 0%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관세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관세 차이가 심한 품목은 유제품으로 캐나다가 높게는 300%에 이르는 양허관세를 설정하고 있으나 호주는 0% 관세를 설정하고 있다. 반면 육류의 국가별 관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미국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26개 중요한 품목군 가운데 세번별로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 사례가 19개 품목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14개 품목군에 대하여 차등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품목군 내에서 차등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반면 호주는 제한된 품목 군에서만 차등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품목군 내에서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수입 물량의 관리를 통한 국내 산업보호라는 측면과 누진관세 체제를 유지하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가공도별로 같은 품목군 내에서 관세를 차등화 하거나 품종별, 저장 상태별로 관세를 차등화 하여 수입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이다.

어느 품목의 세번을 얼마나 세분화하여 분류하는가 하는 것은 관세정책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세분화할수록 관세 목적에 부합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세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그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국별, 품목군별 세번 분류 현황을 육류, 곡물류, 과일 등 중요한 28개 품목군별로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여기서 품목(또는 품목군)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부는 HS 4단위를 두 개 합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쇠고기는 HS 4단위로 0201(신선, 냉장)과 0202(냉동)이 있으며, 표에 나타난 쇠고기는 이들 두 번호를 합한 것이다. 그러나 비교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교에는 문제가 없다.

28개 품목군 가운데 가장 많은 세번수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미국의 치즈와 커드이다. 예를 들면 HS 번호 0406으로 분류되는 치즈와 커드의 경우, 미국은 156개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50개 품목이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는 6개 품목에 불과하다. 일본은 10개 품목, 중국은 5개 품목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품목군은 22류에 속하는 포도주와 포도즙이다. HS 번호 2204에 속하는 품목수를 보면 EU는 94개, 캐나다 26개, 미국 23개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 8개, 4개, 10개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금육의 경우 우리 나라가 HS 번호 0207에 속하는 품목으로 33개를 포괄하고 있어 미국이나 일본보다 품목을 세분하고 있다. HS 번호 1006에 속하는 쌀은 우리나라의 경우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찰쌀, 패미 등 6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미국은 각각 34개와 13개 품목으로 보다 세분화된 관세율표를 가지고 있다.

2.3. 누진관세 현황

누진관세 제도란 원료보다 그 가공품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거나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원료가 가공도가 낮은 상품은 싼값에 해외로부터 구입하여 생산비를 낮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완제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완제품 시장의 발전은 원료

표 4 관세격차 현황(품목군내 및 국별)

	관 세 율 (%)													
	미 국		캐 나 다		EU		호 주		일 본		중 국		한 국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최 저	최 고
쇠고기	40	264	0	265	20%+ 221.0E /100kg	20%+ 475.2E /100kg	0		50		45	70	40.0	
돼지고기	0	14¢/kg	0		7		0		0	5	20	70	22.5	25.0
면양고기	0	28¢/kg	0	25	20%+ 140.9E /100kg	20%+ 487.2E /100kg	0		0		23	70	22.5	
가금육	100		0	249	3	10	0		5	20	20	70	18.0	27.0
밀크, 크림	17.5		6.5	295.5			0		25	35	25	90	89.0	176.0
치즈, 커드	0	25.0	245.5		10.28	345	0	\$1.257/kg	35	40	50	90	36.0	
절화	3.2	6.8	0	125	20		0		0		23	100	36.0	
토마토	28¢/kg	39¢/kg	0	468¢/kg			0		5		13	70	45.0	
양파, 마늘	20.0%		0	468¢/kg	12	13	0		5	10	13	70	27.0	360.0
채두류	0	49¢/kg	0	3.75¢/kg	12	17	0		5		13	70	27.0	
매니옥, 기 타	0	16.0%	0	95	6		0	5	10	25	0	80	18.0	887.4
감귤류	0.8%		0		12	20	0		0	40	40	100	30.0	144.0
포도	0	35¢/kg	0	6	9	18	5		2	20	40	80	21.0	45.0
사과, 배	0	0.3¢/kg	0	85	9		0		8	20	20	100	45.0	
차류	0	6.4%	0		0	23	0		0	20	30	100	60.7	513.6
밀	2.8%		50	78.5	20		0		68¥/kg		114	180	1.8	9.0
보리	0.1¢/kg	0.15¢/kg	21	97.5	145t		0		46¥/kg		91.2	160	299.7	513.0
옥수수	0	0.25¢/kg	0		0	147t	0		0	15¥/kg	40	180	328.0	630.0
쌀	11.2%		0		12		0		402¥/kg		40	180	-	
전분	0	2.6%	0	105	30		0	5	158¥/kg	140¥/kg	20	50	50.9	800.3
대두	0		0		0		0		0		11.4	180	487.0	
낙화생	131.8%	163.8%	0		0		5		726¥/kg		0	70	230.5	
아이스크림	17.0%	20.0%	6.5	277			4		25	35	45	90	22.9	54.0
포도주	53¢/L	224¢/L	282¢/L	172¢/L	40		5		225	30	60	180	30.0	

자료: 국별 관세율표, 2000.

표 5 국별 HS분류의 세분화 정도

	미 국	캐나다	EU	호 주	일 본	중 국	한 국
쇠고기	42	12	14	6	13	6	6
돼지고기	14	6	22	6	24	8	6
면양고기	19	12	27	9	9	9	8
가금류	19	38	42	13	22	21	33
밀크와 크림	30	14	28	5	38	5	10
버터밀크	25	6	30	2	25	2	3
치즈, 커드	156	34	50	7	10	5	6
절화	16	11	7	2	5	2	10
감자	7	2	4	2	2	2	2
토마토	11	4	1	1	1	1	1
양파, 마늘	7	13	5	3	6	5	5
채두류	10	9	3	3	3	3	3
매니옥,기타	10	4	8	6	12	10	15
감귤류	10	5	13	5	9	7	6
포도	8	5	8	2	3	2	2
사과, 배	4	6	7	2	2	5	3
커피	9	5	6	5	6	6	6
차류	7	6	4	4	8	10	4
밀, 메슬린	25	4	4	2	8	4	6
보리	3	4	2	1	4	2	4
옥수수	5	2	6	2	9	2	4
쌀	13	4	34	4	8	5	6
전분, 이눌린	10	9	7	6	19	6	7
대두	3	1	2	1	1	5	2
낙화생	12	2	3	2	6	3	2
초콜렛·코코아 함유 식품	77	11	21	5	25	5	13
아이스크림	7	3	3	1	8	1	4
포도주	23	26	94	18	10	4	8

자료: 국별 관세율표, 2000.

의 수요를 증가시켜 원료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가공도가 높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완제품 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자신들을 값싼 원료의 공급 기지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누진관세 체계는 완제품 산업의 실효보호율을 높여 산업보호 효과를 크게 하는 제도이다. 그 만큼 관세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역관세는 그와 반대되는 형태로 완제품 산업이 관세정책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게되는 제도이다. 균등관세는 모든 품목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차등관세는 품목간 관세율에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차등관세가 곧 누진관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나라는 일반적으로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들에서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무역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 6>에 제시한 국가들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최종 소비재 농산물(또는 식품)의 관세가 기초 농산물이나 중간재 농산물보다 높아 누진 관세를 나타내고 있다. 완제품과 원료 농산물간의 관세 차이는 평균 18.3% 포인트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완제품과 중간재 농산물 사이에도 10.6% 포인트의 관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관세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는 노르웨이로 완제품과 원료 농산물 사이의 관세 차이가 77% 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누진관세 체계의 완화를 주장하는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심한 누진관세 체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가공식품의 양허관세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낮은 관계로 역관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누진관세 체계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WTO 협상의 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를 비롯한 케언즈 국가들과, ASEAN, 카리브해공동체 등이 누진관세의 제거를 제안한 상태이다. 쿠바 등 11개 개발도상국 그룹은 누진

표 6 주요 국별 누진관세 현황

국 별	기초농산물	가공된 중간재 농산물	소비재 농산물
한 국	74.0	82.1	43.4
호 주	3.2	3.2	4.4
캐 나 다	3.6	8.3	30.6
체 코	5.2	9.2	13.5
EU	18.0	11.6	25.0
헝 가 리	20.1	20.4	34.2
일 본	34.9	28.1	36.2
뉴질랜드	0.8	3.2	9.9
노르웨이	101.7	139.9	178.8
폴 란 드	23.1	24.7	42.2
스 위 스	87.0	115.2	144.2
미 국	7.3	5.0	15.8
평 균	32.6	40.3	50.9

주: 한국의 경우 'AMAD'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임. 기타국은 자료에서 인용.

자료: FAO,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 Resource Manual," 2000.

¹ 실효보호율이란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관세율까지 고려한 보호율의 개념으로 원료의 관세율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원료의 관세율이 낮으면 수입 가격이 그 만큼 하락하여 생산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산업의 경쟁력은 커지게 된다. 반면 명목보호율은 양허관세율이나 실행관세율 등 표시된 관세를 자체를 의미한다.

관세 체제의 제거를 위한 관세 조화 방식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누진관세 제도의 개선에 긍정적이다. 누진관세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일본은 누진관세 제도의 폐지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농산물 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누진관세 체계의 완화 문제는 관세의 공식에 의한 감축 주장과 연관되어 있는 쟁점이다.

3. 관세 감축방식별 감축효과

GATT 또는 WTO 협상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었거나 기타 협상과 관련하여 제기된 몇 가지 대표적인 관세감축 방식 가운데 공식에 의한 감축은 다음과 같다. 그밖에 실행세율을 양허하는 방식이나 RO (Request-Offer 방식) 등이 있으나 이는 일정한 공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해 당사국간의 협상이나 품목별로 실제로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첫째, UR 방식으로 평균 감축률과 최소 감축률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품목별로 신축성을 가지고 관세를 감축해 나가는 것이다. UR 협상에서 결정된 평균 감축률은 36%(개발도상국은 24%)이고, 최소 감축률은 15%(개발도상국은 10%)이다. 100%가 기준 관세율일 경우 감축을 이행한 이후의 평균 관세율은 64%이나 품목별로 0%에서 85% 사이를 유지하게 된다.

둘째, 스위스 방식으로 일정한 공식을 사용하여 높은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하는 것이다. 공식은 $t_1 = (a \times t_0)/(a +$

$t_0)$ 으로 t_1 은 관세 감축 후의 관세율을 나타내고 t_0 는 관세 감축 이전의 관세율을 나타낸다. a 는 주어진 값으로 a 가 작을수록 감축률은 커진다. a 값은 14(미국, 스위스 등 주장) 또는 16(EC, 호주 등)이 제기되었다. 기준 관세율이 100%, a 가 16이라고 가정하면 감축 이후의 관세율은 13.8%로 감축률은 86.2%가 된다. a 를 30이라고 하면 감축 이후에 관세율은 23.1%로 감축률은 76.9%이다. 기준 관세율은 50%, a 를 16이라고 하면, 감축 이후의 관세율은 12.1%로 감축률은 75.8%가 된다.

셋째, 캐나다가 제시한 방식으로 5% 미만의 낮은 관세 품목은 0% 관세로 가고, 40%보다 높은 관세 품목은 감축 이후의 관세를 일정하게 20%가 되도록 감축하고, 그 밖의 품목은 50%를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40%가 넘는 높은 관세 품목과 40% 주변에 분포한 품목의 관세는 20% 주위에 분포하게 된다.

넷째, 미국이 주장한 방식으로, 관세율이 6.7% 이내의 품목은 관세 인하율이 50% 내지 60%로 나타나고, 6.7%를 초과하는 품목들은 일률적으로 60%의 감축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Y = 1.5t_0 + 50\%$ (단, Y 는 감축률로 t_0 가 6.7 미만이므로 60을 초과하지 못함)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는 품목은 60% 감축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일본이 내놓은 방식으로 5%보다 높은 관세에 대해서만 공식에 의해 감축하고 그 이하는 감축하지 않는 방식이다. 5%보다 높은 관세의 감축 방식은 $t_1 = t_0 \times$

(1-0.7) + 3.5%이다. 기준 관세율이 100% 일 경우 감축 이후에는 33.5%가 되는 것으로 70% 감축을 기본으로 하되, 감축 이후에 3.5%를 더하여 5% 이상 되는 관세 품목이 감축 이후에 5% 이하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5%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관세는 감축되지 않도록 한 것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관세감축의 효과에 대하여는 송유철 외(1999)와 임정빈(2000)이 있으며, 두 연구는 관세감축 방식별 관세감축의 의미를 우리 나라 주요 농산물에 적용하고 농산물 협상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다른 감축방식 가운데 스위스 공식과 UR 방식은 중복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캐나다 방식은 새롭게 적용된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가 농산물 가운데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계산한데 반해 전체 농산물을 계산하여 그 평균을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결과(FAO, 2000)와 함께 논의하였다.

관세감축 방식별 관세감축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FAO(2000)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 <표 8>이다. 다만 FAO의 연구에서 누락된 한국의 경우는 AMAD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각각의 감축 방식을 관세율표에 나타난 품목별로 적용하여 감축률을 결정한 후 평균한 것이다(단, 한국의 UR 방식 감축의 경우 품목별로 계산한 결과를 평균한 것이 아니고, 평균 관세율을 단순히 24% 감축한 결과임). 대부분의 공식이 높은 관세일수록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에 의한 감축이 UR 방식이나 일정률 감축보다 높은 관세를 많이 감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UR 방식이 낮은 감축률을 나타낸다(단, 스위스 공식의 경우 관세 상한을 나타내는 계수 a의 크기에 따라 계산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 감축 전후의 평균 관세 수준이 평균 감축률과 다른 것은 품목별로 감축률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방식이 일부 국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감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관세율이 낮은 국가(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 있어서는 캐나다 방식이 오히려 더 많은 관세 감축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표에 나타난 11개국(한국 제외)의 UR 양허관세율 평균은 45%이며, UR 방식으로 감축할 경우 평균 23.6% 감축되어 최종 평균 관세율은 34.4%가 된다. 고율 관세 구조를 가진 국가에 대하여 가장

표 7 주요 관세 감축 방식

관세 감축 방식	수 식
1. UR 방식	$t_1 = t_0 * (1 - UR \text{ cut}) + \text{subject to min. } 15\% \text{ cuts}(UR \text{ cut } 36\%, 24\%)$
2. 미국 방식	$\text{If } t_0 > 6.7\%, t_1 = t_0 * (1 - 0.6) \text{ else, } t_1 = t_0 * (1 - 0.5) - 1.5 * t_0^2 / 100$
3. 캐나다 방식	$\text{If } t_0 < 5\%, t_1 = 0, \text{ if } t_0 > 40\%, t_1 = 20\%, \text{ else, } t_1 = t_0 * (1 - 0.5)$
4. 스위스 방식	$t_1 = (a * t_0) / (a + t_0); a = 16 \text{ or } 14$
5. 일본 방식	$\text{If } t_0 > 5\%, t_1 = t_0 * (1 - 0.7) + 3.5\%; \text{ else } t_1 = t_0$

큰 감축 효과를 나타내는 스위스 공식에 의한 감축의 경우 평균 관세율은 5.9%로 낮아진다. 스위스 공식에 의한 감축은 11개국에 대하여 평균 86.7%의 감축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 방식에 의한 관세 감축률은 79.3%이다. 스위스 방식의 경우 84.5% 감축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관세 감축방식은 누진관세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방식별로 누진관세 체계를 완화시키는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종 소비재와 원료 농산물 사이의 관세 차이는 <표 8>에 나타난 11개국의 평균이 18.3% 포인트이다.

표 8 감축 방식별 평균 관세율 감축폭

국 별	UR 양허관세	UR 방식	캐나다 방식	스위스 방식
한 국	63.8	48.5	13.2	9.9
호 주	3.9	2.6	1.7	2.4
캐 나 다	21.8	18.0	3.4	3.6
체 코	12.2	9.1	5.0	4.6
EU	21.1	14.5	7.2	6.2
헝 가 리	29.3	20.4	12.5	8.8
일 본	33.4	26.4	6.5	5.9
뉴질랜드	7.3	5.0	3.6	3.7
노르웨이	152.0	119.7	10.4	7.9
폴 란 드	35.9	23.3	11.4	8.7
스 위 스	126.1	101.6	12.3	9.3
미 국	11.9	9.1	3.3	3.6
평 균*	45.0	34.4	7.0	5.9

주: * 한국을 제외한 11개국의 평균임. 한국의 경우 한국의 양허관세율표(AMAD 제공)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그 외는 FAO,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 Resource Manual," 2000에서 인용.

표 9 감축방식별 누진관세 체계의 변화

품 목 군	UR 방식	캐나다 방식	스위스 방식
원자재(A)			
현행	32.6	32.6	32.6
이행 이후	22.8	5.1	4.1
중간재(B)			
현행	40.3	40.3	40.3
이행 이후	29.0	5.7	4.8
소비재(C)			
현행	50.9	50.9	50.9
이행 이후	40.1	8.0	6.7
관세 차(B-A)			
현행	7.7	7.7	7.7
이행 이후	6.2	0.6	0.7
관세차(C-A)			
현행	18.3	18.3	18.3
이행 이후	17.3	2.9	2.6

자료: FAO,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 Resource Manual," 2000.

이러한 누진관세는 UR 방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할 경우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 방식을 이용할 경우 관세 차이는 2.9% 포인트로 감소하여 누진관세 체계가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방식을 적용할 경우 관세 차이는 2.6% 포인트로 감소하여 누진관세 체계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맺음말

관세정책은 외국의 경쟁 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간 무

역 협상이나 양자간 무역 협상에서도 관세 협상은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WTO 농산물 협상 가운데 관세협상 분야에서는 관세감축의 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감축 폭을 어느 정도로 하는가와 어떠한 방식으로 감축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감축폭과 감축률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UR 협상에서 인정된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화 한 데서 비롯된 고율 관세 문제, 회원국간 및 품목간 관세격차 문제, 보호무역적 측면이 강한 누진관세 체계의 문제 등이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이다. 주요 회원국들의 경우 누진관세 체계가 일반적이며, 회원국간 그리고 품목간 관세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화에 의한 고율 관세 문제는 농산물 수입국은 물론 수출국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식을 이용한 관세감축 방식의 경우 이용하는 계수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관세감축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스위스 방식이 일부 국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 방식보다 큰 감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국(한국 제외)의 UR 양허관세율 평균은 45%이며, 스위스 공식에 의한 감축은 평균 86.7%의 감축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 방식에 의한 관세 감축률은 79.3%이다. 스위스 방식의 경우 84.5% 감축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관세

가 감축될 경우 고율관세 문제와 국가간, 품목간 관세격차 문제는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감축방식은 누진관세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방식별로 누진관세 체계를 완화시키는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종 소비재와 원료 농산물 사이의 관세 차이는 평균 18.3% 포인트이다. 이러한 누진관세는 UR 방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할 경우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 방식을 이용할 경우 관세 차이는 2.9% 포인트로 감소하여 누진관세 체계가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방식을 적용할 경우 관세 차이는 2.6% 포인트로 감소하여 누진관세 체계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출국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명분으로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식에 의한 관세인하 방식은 높은 관세율을 더 많이 감축하여 관세 격차를 해소하고 고율 관세를 효과적으로 낮추며, 누진관세의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고율 관세 품목이 많은 농산물 수입국들은 이러한 관세인하 방식이 과도한 관세 감축을 초래하고 관세 인하에 신축성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한 방식이다. 품목별 특성과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UR 방식과 같이 관세 인하에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 인하 방식에 따라 관세 감축폭과 감축의 신축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관세인하 방식을 개발하고,

협상에서 우리 나라에 가장 유리한 관세인
하 방식이 채택되도록 협상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농림부. 2000. 「농림산물 품목분류」.
 대한상공회의소. 1997. 「대외무역법」.
 박상태. 1996. 「관세정책요론 : 관세의 이론과
 실제」. 한국관세연구소.
 송유철, 박지현. 1999. “WTO 농산물협상의 관
 세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 「대외경
 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정빈. 2000. “차기 WTO 농산물 관세인하협
 상과 정책과제.” 「농업경제연구」. 제41

집 제2권. 한국농업경제학회.
 최세균·어명근 등. 1998. 「농산물 및 식품 관
 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
 보고 R3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관세연구소. 1999. HS 종합편람 관세율표.
 Australia.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Canada. 2000. Customs Tariff.
 China.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EU. 1999. Common Customs Tariff.
 FAO. 2000.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 Resource Manual.”
 Japan. 2000. Customs Tariff Schedule.
 U.S.A. 200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부표 1 국별 고율 실행관세 및 품목 분포

국 별	세율(%)	품 목 군 (HS 4단위)
한 국	49~50	2008, 2009, 0705, 0702, 0714, 0802, 0806-0810, 1212, 2002, 1904, 0813,
호 주	5	0710, 0712, 0806, 0813, 1512, 1515, 1602, 1702, 1902, 2005~2009, 2204
일 본	44~51	2008, 1702, 1602, 0202, 0201, 0206
미 국	3.5	2401~2403
뉴질랜드	8~9.5	1108, 1517, 1901-1905, 2101, 2106, 2309, 2004, 2008, 2006, 2204, 2205, 2208
태 국	60~65	0203, 0204, 0206, 0207, 0210, 0406, 0602, 0709~0711, 0713, 0802, 0804, 0805, 0813, 2208, 0409, 1212, 1701, 1703

자료: 국별 관세율표, 2000.
 OECD, UNCTAD, FAO, ERS 등이 제공하는 'AMAD'.

부표 2 국별 고율 양허관세 및 품목

국 별	세율(%)	품 목 군 (HS 4단위)
한 국	754.3~887.4	0714, 1007, 1008, 1102, 1103, 1104, 1108, 1211, 1302, 2106
EU	20~74.9	0811, 1905, 2006, 2007, 2008, 2009, 2105, 2204, 2402, 2403, 3809
호 주	16~29	0712, 1105, 1302, 1602, 1806, 2009, 2106, 2401, 2403, 2905, 3823
일 본	50~114.2	1005, 1602, 1702, 2011, 2012, 2013, 2021, 2022, 2023, 2061, 2062, 2106
캐 나 다	250~313.6	0401, 0402, 0404, 0405, 1602, 1806, 1901, 2105, 2106, 2202,
미 국	20~163.8	0201, 0202, 0403, 0406, 0703, 0704, 0709, 0712, 0804, 0807, 1202, 2008, 2105
뉴질랜드	22.4~35.2	0712, 1108, 1517, 1602, 1901, 1905, 2002, 2101, 2005, 2008, 2009, 2204, 2208
태 국	90~226	0402, 0701, 0703, 0712, 0901, 0902, 1209, 1507, 1511, 1513, 1701, 2304, 5002

자료: 국별 관세율표, 2000.
 OECD, UNCTAD, FAO, ERS 등이 제공하는 'AMAD'.